

[별첨 1]

정관 신구조문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	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, 운용 및 업무집행사원 업무 1.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투자조합의 설립 및 운용 1. 특수목적회사(SPC)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. 기업인수합병(M&A)에 관한 자문, 주선 및 투자 관련 업무 1.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의 설립 및 운용 1. 벤처기업, 창업자 및 이에 투자하는 조합 등에 대한 투자 및 출자 1.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셀러레이터 사업	신설